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기구명칭정비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확정한 실·과의 명칭표준안을 존중하여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이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 6. 30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동 기능전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이 2002. 12. 31까지로 연장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다. 매월 보건진료소 폐지
- 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매월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제5조, 제6조제1항)
○ 정보홍보실을 정보홍보담당관으로 함(제5조)
○ 종합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함(제6조제1항)

나. 매월 보건진료소 폐지
○ 제9조 관련 [별표1]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서 매월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

다.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부칙 제2조)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라. 조례시행일(부칙 제1조)
○ 한시기구의 승인 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함

3. 검토의견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온 그 동안의 광주광역시 서구 본청 행정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1998년에는 기존의 3국 2실 1담당관 15과를 3국 2실 13과로 개편하였는바,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문화홍보실을 폐지하며,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기타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총무과와 회계과를 통합, 15실·과를 14실·과로하여 1과를 감축하였고, 3개 과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으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대민 한시기구로서 2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대민 한시기구 2개를 포함 16실·과를 15실·과로 하여 1과를 감축하였고(대민 한시기구 1개 폐지), 3개 과의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경영회계과"를 신설하여 '경리·재산경영·시설관리담당'을 두었으며, "민원봉사과"를 "지적과"와 통폐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담당'을 배치하여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였음.)

그 동안 3차례 실시된 행정기구 개편의 주된 내용은 실·과의 통폐합에 따른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었고, 이는 우리 구만의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부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나 고려해야 할 일반원칙도 없이 각지방자치단체에 지방조직개편의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공공행정조직의 현실에 맞지 않는 기구명칭을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 반면, 기능의 변화가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구명칭의 잦은 개편으로 말미암아 기구표시판의 교체 등 사무비용이 증가하고 기능분산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기구명칭 상이로 말미암아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기능의 연계성이 취약하다는 것 등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필수기구제 폐지 이후(98년

6월 18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 및 명칭운용 등과 관련하여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명칭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월보건진료소의 폐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풍암유통단지와 준공업지역 등 인근지역의 개발로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매월동 지역주민들도 도심권 수준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에 관한 경과 조치(부칙 제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에서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구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키로 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으로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동기능 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제518호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를 「제2조(행정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구는 2001년 6월 30일까지는 15 실·과로 하고,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15 실·담당관·과로 하며,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14 실·담당관·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시행일(부칙 제1조) 즉 한시기구의 승인 효력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는 한시기구의 승인효력이 2001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므로 개정된 조례의 적용일을 2001년 7월 1일로 하자는 것으로 행정의 연속성 및 통일성이라면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의2 (조직관리지침의 시달)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의 조직관리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8・31> [본조 신설 97・2・4]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7・2・4, 98・8・31>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2・4, 98・8・31, 99・9・9>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승인)

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은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시정원을 신규 책정하거나 설치 승인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의 연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시기구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사유·존속기한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 및 기존정원의 활용방안을 기재한 서류
3.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과정표
4. 1인당 업무량산출표
5. 당해 업무에 관한 추진계획서
6. 사무실 확보·활용계획서 및 예산조치계획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6월부터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당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6월부터 한시기구의 폐지로 발생하게 될 초과현원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 3월부터 그 초과현원의 직급에 해당하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현원 중에서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